
문서번호 : 10-02-사무08
수 신 : 법무부 형사법제과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제 목 : 민변 법률의견서
전송일자 : 2010. 2. 19. (금)
전송매수 : 5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안)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귀 기관이 2010.2.3. 법무부 공고 제2010-23호로 입법예고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민변은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붙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안)에 관한 민변 의견서 1부.끝.

2010년 2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안)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제정이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활용을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안’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자문서의 유통표준 등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문서의 범위 명시(안 제2조)
- 나. 전자문서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안 제3조)
- 다. 기관간 유통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안 제4조)
- 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의 설치·구성(안 제6~11조)
- 마.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2~15조)
- 바. 형사사법정보체계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6~18조)

3. 검토의견

가. 법안 자체의 위헌성과 시행령 제정의 방향

민변은 2009년 7월 6일 국회 법사위에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통합(내지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신속, 공정, 투명한 형사사법 업무처리와는 별 관계가 없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 둘째, 법이 규정한 형사사법정보 등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어떤 정도의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는

점, 셋째,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그 기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넷째,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간의 형사사법정보 제공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점 등이다.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통한 정보의 집적과 집중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²⁾

이처럼 법안 자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은 상황에서는 가급적 시행령이라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안 제17조가 법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번 시행령안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고민 없이 단지 기술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나. 형사사법정보의 제한 필요성(시행령안 제2조)

법안 제2조 제3호는 형사사법정보에 대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를 이처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바람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처리하는 거의 모든 정보가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입법방식이다. 그리고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의 질 확보의 원칙, 목적 명시 원칙, 이

1) 자세한 내용은 「법사위 법률안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84호)”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의안번호 4885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참조. 그밖에 법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 「개인정보 수집·저장·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정보인권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이은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국회 법사위) 등 참조

2) ‘십스’보다 더한 거대망 ‘키스’를 킥하라 한겨레21 제766호

용제한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 등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입법방향에도 역행한다. 따라서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형사사법정보란 ‘시스템을 이용해 작성, 취득, 관리하는 것’이고 법안 제5조 제1항은 형사사법업무 관련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해’ 저장·보관하되, 업무성격상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여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용해 저장·보관하는 정보의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양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법안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현 시행령안처럼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는 것이 곤란한 것에 한하지 않고 정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해 저장·보관하는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정보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 정보제공 제한 필요성(시행령안 제4조)

법안 제6조 제2항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관간 제공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다. 그리고 시행령안 제4조 역시 기관간 제공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나 절차,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오히려 동조 제1호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 송·수신되는 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관 운영세칙으로 재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기관간 제공의 요건, 절차,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의 설치·구성(안 제6~11조)

시행령안 제6조 제2항은 운영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경력 10년 이상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하도록 하고 있다. 민변은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협의회가 검찰위주로 운영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운영단의 경우에도 검찰에의 권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장을 호선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 협의회의 기능 규정 필요성

법안 제12조는 협의회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등 핵심적인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안이 정한 협의회의 기능은 대부분 직접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다. 시행령에 협의회의 기능으로 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거나 협의회가 협의·조정할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법안 자체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 제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안의 위헌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된 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기술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끝.